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
■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02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3
※ 참고자료	8
1. 한국탄소중립진흥원(성일종 의원안)과 관련 센터 비교	8

I. 제안경위

2024년 8월 1일 성일종위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경기침체·인구감소 등의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결과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전국에 약 52조원의 경제적 손해(생산유발금액 기준)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충청도·전라도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더 극심할 것으로,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

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폐지지역 지원 및 진흥사업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 수립 지원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기관으로서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6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5호)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검토의견

1.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진흥사업에 대한 조사·연구·평가와 정책수립 지원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기관으로서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8조의2(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 ①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현행	개정안
	1. 정책·제도의 조사·연구·기획 2.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4. 다음 각 목의 사업의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가.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지지역을 포함한다) 지원 대책 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진흥사업 5. 탄소중립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6. 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 양성 7.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현행	개정안
	<u>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u> <u>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u>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u> <u>⑤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u> <u>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현행법 제2조¹⁾는 정의로운 전환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으로 정의하고, 제48조²⁾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등을 통해 그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논의가 확대³⁾되고 있어, 석탄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해서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사회 전 부문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기 대응과 지역간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총괄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현행법 제53조 및 제68조에 근거하여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⁴⁾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⁵⁾ 등의 설치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가 이미 규정(참고자료)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시 각 기관별 사업 내용의 비교 등을 통해 기관별 업무의 명확화 및 중복성 해소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산업부⁶⁾·기재부⁷⁾ 등 관계부처도 기존 기관과의 중복여부, 기관 기능 조정을 통한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3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산업부는 기존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와 기능 등이 중복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기획재정부는 신규기관 설립 전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기존 기관의 기능 확대를 통한 사업 수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기존 기관의 관련 기능 보강을 통해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참고자료

1. 한국탄소중립진흥원(성일중 의원안)과 관련 센터 비교⁸⁾

구분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
관련 조항	성일중 의원안 제68조의2 ③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주요 업무	1. 정책·제도의 조사·연구·기획	<시행령 제53조제4항> 1.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추진 동향의 조사 및 연구	
	2.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법 제53조제2항>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시행령 제63조제2항>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 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3.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법 제53조제2항> 2.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법 제68조제2항> 1.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시행령 제63조제2항> 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 역량 강화사업 지원
	4. 다음 각 목의 사업의 조사· 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가.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의 로운전환 특별지구(「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지지역을 포함한다) 지원 대책 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법 제53조제2항>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 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시행령 제53조제4항> 2. 지역별·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 지원 4.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산업· 고용·지역경제 회복 등을	

8) 자료: 환경부

구분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진흥사업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5. 탄소중립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법 제53조제2항>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시행령 제63조제2항> 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6. 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 양성		
	7.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행령 제63조제2항>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5.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 위기 대응활동 지원 6.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 활동 지원
	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시행령 제63조제2항> 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령 제63조제2항> 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축산·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예산 지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 '23년 예산 : 54억원(37개소) (광역:2억, 기초:1억)
비고		※ 산업부장관과 고용부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에 센터를 둘 수 있음(시행령 제53조)	<'23.7월말 기준, 운영 현황> - 광역 : 17개소 - 기초 : 13개소